

[쌍방대리쟁점] 특허무효심판 청구인의 대리인 변리사가 피청구인의 별개 사건 특허출원  
건을 대리하는 경우 - 쌍방대리 해당하지 않음, 변리사법 위반 없음: 특허법원 2019. 1.

31. 선고 2017허3492 판결



#### 가. 변리사법 제7조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

변리사법 제7조는 "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는바, 이 규정이 변리사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일방을 대리하여 업무를 취급하였다가 타방을 대리하여 종전 당사자의 이익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업무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, 동일한 변리사가 동일한 사건에서 시기를 달리하여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을 대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을 동시에 대리하는 행위도 당연히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5후2571 판결 등 참조).

한편, 원고 소송대리인이 피고로부터 특허청에 대한 2건의 특허출원업무(특허출원번호 제10-2015-7010816호 및 제10-2015-7013429호)를 위임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 그러나 원고 소송대리인이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위 특허출원업무는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아니므로 이 사건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종전 당사자의 이익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업무를 취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변리사법 제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.

#### 나. 민법 제124조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

민법 제124조에 의하면,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. 살피건대, 원고 소송대리인이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건이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아님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, 따라서 동일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. 결국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124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.

변리사24년/변호사16년, 특허심판소송, 민형사소송, 손해배상, One-Stop Service

T. 02-591-0657 E. [kkh@kasanlaw.com](mailto:kkh@kasanlaw.com) H. [www.kasanlaw.com](http://www.kasanlaw.com)